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3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발의자 : 이수진 · 김문수 · 서영석

백혜련 · 송옥주 · 김남희

장종태 · 조정식 · 백선희

전진숙 · 남인순 · 전종덕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 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 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무연고아동”을 “무연고 아동등”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실종아동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① 실종아동등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원

행정처장에게 「민법」 제781조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경우의 연도별·지역별 등록 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제출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기관의 장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p> <p>1. · 2. (생략)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u>무연고아동</u> ② ~ ⑥ (생략)</p> <p><u><신 설></u></p>	<p>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무연고 아동등</u> ② ~ ⑥ (현행과 같음)</p> <p><u>제15조의2(실종아동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① 실종아동등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② <u>제1항의 청구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u></p>

<p>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생략) <u><신 설></u></p>	<p><u>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민법」 제781조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경우의 연도별·지역별 등록 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제출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	---